

검 토 보 고 서

2019. 12. 9.(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구청장
- 제안일 : 2019. 11. 15
- 회부일 : 2019. 11. 18. (의안번호 : 19 -145)

2. 제안이유

- 우리 구 거리가게 운영자 중에서 생계형 운영자에게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기금의 목적 및 존속기한(안 제1조~안 제2조)
-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지원대상(안 제3조~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안 제6조~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안 제8조~안 제12조)
- 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성과분석(안 제13조~안 제14조)
- 회의록(안 제15조), 시행규칙(안 제16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제117조(과태료)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5. 검토보고

-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 있는 180개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생계형 운영자에게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마련 및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기금의 목적 및 존속기한을 두는 내용임.
- (안 제3조~안 제5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임.
- (안 제6조~안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 공무원 관한 내용임.
- (안 제8조~안 제12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임
- (안 제13조~안 제14조)기금운용계획,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내용임.
- (안 제15조, 안 제16조)회의록 작성과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안은 관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과 지원 자금 지급을 통해 관내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 노점을 운영하는 주민이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할 때, 재취업과 직업교육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마련된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거나 신규발생 거리가게가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단속도 병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